

2010. 9. 14. (화) 10:00

제169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 
제2차 본회의

# 조례안 심사 보고서

총무위원회

## 【 목 차 】

1.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 - - - - 1
2.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 - - - - - 6

# [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]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0. 08. 27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0. 08. 30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0. 09. 09
- 마. 의안번호: 제2010 - 36호

## 2 개정이유

- 공설일반묘지에 대한 재정비사업으로 공설 공원묘지로 조성된 공설일반묘지의 명칭을 공설공원묘지로 변경하고,
- 장묘시설의 사용면적과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기준·금액·납부방법 장묘시설의 사용권의 취소사유,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나 무연분묘의 처리방법, 장묘시설의 운영위탁 등 현행조례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.

## 3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거나 신설하여 규정함(안 제2조).
- “장묘시설”과 “공설공원묘지” 및 “봉안시설”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비하고, “자연장 및 자연장지”와 “평장”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.

나. 공설일반묘지 중 공설공원묘지 재정비 사업으로 공설공원묘지로 변경된 곳의 명칭을 변경함(안 제4조, 안 별표 1).

종 전	변 경
<공설일반묘지>	<공설공원묘지>
웅양죽림공설일반묘지 (죽림리 산 108, 11,379㎡)	웅양공설공원묘지 (죽림리 산 108, 11,379㎡)
남상월평공설일반묘지 (월평리 산 201, 6,744㎡)	월평공설공원묘지 (월평리 산 201, 6,744㎡)

다. 합장 묘지와 평장·자연장지 등 장묘시설 1기당 사용면적 기준을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함(안 제6조).

- 묘지 : 10제곱미터(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) 이내
- 평장·자연장지 : 5제곱미터 이내.

라. 장묘시설의 사용자에게 부과·징수하는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기준과 금액 및 납부방식을 변경하고, 평장·자연장지에 대한 금액 등을 신설하여 규정함(안 제7조, 안 별표 2).

- 사용료 등 납부방식 변경
  - 현행 : 사용료는 일시에, 관리비는 3년마다 수입증지로 납부
  - 개정 : 사용료 및 관리비를 사용허가신청 시 군 금고에 일시 납부
- 사용료 등 신설
  - 평장·자연장지 : 1기당 사용료와 관리비 각각 10만원

마. 분묘의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(안 제9조제2항).

- 합장 분묘에 대한 설치기간 계산은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함

- 바. 장묘시설의 사용자에게 부과·징수하는 관리비의 납부방식은 종전 3년마다 납부하던 것을 사용허가신청 시 사용료와 함께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장묘시설 사용권에 대한 취소사유 중 ‘관리비를 2회 연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’는 삭제함(안 제12조제3호 삭제).
- 사. 분묘의 사용권이 취소되어 유골의 수거 및 개장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,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에 대하여 그 연고자가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아니하여 무연분묘로 간주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도록 정비함(안 제13조제2항).
- 아. 봉안시설의 유골안치기간이 지난 후에 연고자가 유골반환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 후 공설묘지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도록 정비함(안 제16조의2제3항).
- 자. 장묘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수탁자의 범위와 수탁자의 선정기준·절차·방법, 위탁관리계약의 체결, 운영위탁 기간과 그 기간의 갱신, 그 밖에 운영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의 준용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함(안 제18조).
- 차. 그 밖에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거나 용어를 순화하고, 문장 표현을 명확하게 하여 이해하기 쉽고 논리에 맞도록 정비함.

#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「공설 일반묘지」 정비사업에 따라 「공설공원 묘지」로 재정비된 묘지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로서,

##### <거창군 공원 및 일반묘지 현황>

구 분	계	공원묘지	일반묘지	비고
개소수	135	8	127	
면적(m <sup>2</sup> )	645,836	95,279	550,557	

- 그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

제2조(정의) 장묘시설과 공설공원묘지 및 봉안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 자연장 및 자연장지, 평장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 하였으며,

제4조(명칭과위치)에서는 「웅양죽림 공설 일반묘지」를 「웅양공설공원묘지」로 「남상월평 공설 일반묘지」를 「월평공설 공원묘지」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음.

이 밖에 묘지관리에 따른 장묘시설 1기당 사용면적과 사용자에게 부과·징수하는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기준과 납부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,

또한 분묘의 사용권이 취소 되는 등 무연분묘로 간주된 경우의 처리방안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묘지관리상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음.

○ 그 밖에 조례개정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# [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] 심 사 보 고 서

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0. 08. 27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0. 08. 30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0. 09. 09
- 마. 의안번호: 제2010 - 37호

## 2. 제정이유
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거창군민이 타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,
- 군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(안 제1조, 제2조).

나. 화장장려금의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3조).

- 화장장려금의 지원대상은 **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** 그 연고자가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화장신고를 한 경우로 함.

다. 화장장려금의 지원기준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.

- 화장장려금은 사망자 1명당 25만원으로 하며,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.

라. 화장장려금의 신청 및 지원절차와 지급대장의 기록·관리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, 제6조).

-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원 신청서에 화장신고 증명서 또는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을 붙여 거주지 읍·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,
- 군수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사실을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심사·결정하고, 화장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통지서를 발급하며, 관리를 위하여 지급대장을 기록·관리토록 함.

#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조례안은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묘지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거창군민이 타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서,
- 그 주요 내용을 보면  
화장장려금의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그 연고자가 화장신고를 한 경우로 하였으며,  
화장장려금의 지원기준은 사망자 1명당 25만원을 지원하며 기타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○ 이 밖에 조례제정과 관련한 형식이나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